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6 차 국 방 위 원 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11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총괄적 검토	2
2. 법률별 검토	5
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16.
3. 회부연월일 : 2024. 8.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 2011년 3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제도¹⁾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이 개정됨.

□ 종래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용어 자체가 차별적 의미가 있었고,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한정치산이나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게 획일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여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²⁾

이러한 배경하에 도입된 성년후견 제도는 행위능력을 획일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능력에 장애가 있더라도 현재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며, 이를 전제로 행위능력을 개별적·한정적으로만 제한함으로써 정신장애인, 노인 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1) 성년후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피성년후견인’이라 지칭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피한정후견인’이라 지칭함. 성년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뉘고 법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으로 구분됨.

2)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한정후견·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 규정 개정 방안 연구)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 성년후견 제도의 비교³⁾]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대상)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행위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 가능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u>지속적으로</u> 결여된 사람 (행위능력) 원칙적 취소 가능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를 정한 경우 등은 예외)
한정치산자	피한정후견인
(대상) 심신박약 또는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행위능력) 한정치산자의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 동의 필요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u>부족한</u> 사람 (행위능력) 가정법원이 별도로 정한 행위만 후견인 동의 필요

□ 그러나 종래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각종 자격·영업 등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던 개별 법률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용어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1:1로 치환해 정비하는 경향이 있었음.⁴⁾

□ 이로 인해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수행 또는 임직원의 채용 등 광범위한 직역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은,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 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

3)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정부제출(의안번호 2102796), 2020. 11.]

4) 박인환, 「피후견인 결격조항 폐지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NARS 현안분석, 2019. 12. 27.

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함.

- 개정안은 결격조항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직무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개정안 주요내용]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허가에 대한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 다만,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 또는 기술적 지식이 요구되거나 상당한 주의의무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개별 법률을 대상으로 사전적 또는 사후적 검증수단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 및 타 업체 등록 및 자격 요건 등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시켰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겠음.

2. 법률별 검토

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함)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4조(결격사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u>피성년후견인</u>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1) 본문

□ 현행법 제4조⁵⁾에 따른 제조·판매업 허가의 결격사유 조항을 살펴보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법인의 경우에도 그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있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결격사유’란 특정 자격·허가 등을 취득하는 데 제한이 되는 사유를 말하며, 그에 해당하는 자가 특정 자격·허가 등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음.⁶⁾

그러나 결격사유 규정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공무담임권 행사 등에 중대한 제약이 되므로 해당 결격사유의 취지와 대상 자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격사유를 최소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⁷⁾

5)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삭제 <2016. 1. 19.>

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6) 「법제이론과 실제」, 국회 법제실, 2019. 7., p.360

7) 「법제이론과 실제」, 국회 법제실, 2019. 7., p.369

□ 개정안은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음.

이하에서는 결격조항의 삭제 필요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행 법에 피한정후견인의 직무수행능력을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피한정후견인이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사후적 검증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지를 점검함.

□ 먼저, 현행법 제3조제1항8)에 따라 제조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령9)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 또는 재단기 중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판매업의 경우, 건물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기준 외에 특별히 고도의 전문성이나 기술적 지식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8)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제조·판매의 허가) ①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9)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조·판매업의 시설기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 또는 재단기 중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것
2. 판매업: 건물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부대시설 내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을 갖추는 것

따라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의 제조판매업 관련 규정의 해석능력 및 제조판매업을 위한 시설 구매 계약 또는 건물 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할 정도의 수행 능력이면 제조판매업을 영위할 능력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여짐. 또한 현행법 제3조제4항¹⁰⁾에서는 제조판매업 허가시에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교육이수, 이전 유사업무경력 자료 제출 등 직무수행능력을 직접적·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전적 검증수단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사후적 검증수단에 관하여는 현행법 제5조제1항¹¹⁾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명하거나 제출을 요구한 보고·자료를 거부하

-
- 10)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제조·판매의 허가) ①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1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국방부장관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제5호의 범인이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개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거나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허가조건에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의 직무수행능력을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될 수 있다고 보이고,

또한 현행법 제5조제2항12)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청문 과정에서 직무수행능력의 유지가능성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후적 검증수단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타 업종 등록 및 자격 요건 등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제21대국회에 총 31건이 있었는데,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관련 법령의 심도있는 적용·해석이 필요한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및 사회복지사 등의 결격사유에서도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¹³⁾.

[제21대국회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제외’ 개정현황]

연번	법률명	소관 위원회	내용	개정일
1	경륜·경정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수, 심판 등록	'20.11.19.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20.11.19.

1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제22대국회에서는 처리된 건수 없음.

연번	법률명	소관 위원회	내용	개정일
3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체육지도자	'20.11.19.
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문화예술교육사	'20.11.19.
5	문화재보호법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문화재매매업자	'20.11.19.
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정기간행물 발행인 또는 편집인	'20.11.19.
7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	'20.11.19.
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방송 통신위원회	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	'20.11.19.
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방송 통신위원회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의 임원	'20.11.19.
10	기술사법	과학기술방송 통신위원회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거부	'20.12.2.
11	협동조합기본법	기획재정위원회	협동조합의 임원 등	'20.12.9.
12	경비업법	행정안전위원회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20.12.9.
13	국가공무원법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임용	'20.12.9.
1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위원회	계측업 등록	'20.12.9.
1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위원회	평가대행자 등록	'20.12.9.
16	소방기본법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안전교육사	'20.12.9.
17	승강기 안전관리법	행정안전위원회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20.12.9.
18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사업 등록	'20.12.9.

연번	법률명	소관 위원회	내용	개정일
19	위험물안전관리법	행정안전위원회	탱크시험자로 등록 또는 탱크시험자 업무 종사	'20.12.9.
2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위원회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20.12.9.
21	지방공무원법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 임용	'20.12.9.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무위원회	가맹거래사	'21.3.24.
23	공인회계사법	정무위원회	공인회계사	'21.3.24.
2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정무위원회	임명직 위원	'21.3.24.
2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정무위원회	조정위원회 위원	'21.3.24.
2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정무위원회	조합의 임원	'21.3.24.
27	국가정보원직원법	정보위원회	직원	'21.6.29.
2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위원회	감정평가사	'21.6.29.
29	군인사법	국방위원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	'23.10.6.
3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23.12.8.
31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23.12.20.

□ 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는 법원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한,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여도 특별히 예상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등록신청이 불가능한 자 중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2) 부칙

□ 개정안 부칙 제2조는 현행법 제3조에 따라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후 제조·판매업자 본인 또는 그 임원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¹⁴⁾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도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개 정 안
부 칙 제2조(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제조·판매업자 본인 또는 그 임원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1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제조·판매의 허가) ①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삭제 <2016. 1. 19.>
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국방부장관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제5호의 법인이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개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법 제5조제1항제5호¹⁵⁾에서는 현행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제조·판매업 허가를 취소해야 하고, 현행법 제4조제4호 본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조·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다가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시되어 현행법 제5조제1항제5호(결격사유)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었으나, 3년이 경과되기 전 피한정후견인이 말소된 경우, 현행법 제4조제4호 본문에 따라 현재는 3년이 경과되어야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으나,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 삭제를 전제로) 개정안은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하려는 개정안의 시행 즉시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문 개정안과 같이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타당한 취지로 보임.

□ 다만, 부칙의 특례가 없어도 현행법 제4조제4호 단서조항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이 말소되어 제조·판매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15)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국방부장관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제5호의 법인이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개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년의 경과규정이 애초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 부칙에 특례 규정을 두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⁶⁾.

- ☐ 또한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후 제조·판매업자 본인 또는 그 임원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6) 개정안 본문에 따라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되면 부칙의 특례규정 없이도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유로 제조판매업이 취소되었더라도 개정안 시행 즉시 제조판매업 허가 가능

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개정안은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1항제1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수품무 역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1. <u>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u> <u>피한정후견인</u> 2. ~ 4. (생략) ② ~ ⑤ (생략)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① ----- ----- ----- ----- ----- ----- 1.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 현행법 제57조의2조17)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 17) 「방위사업법」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7조의3제1항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조항을 살펴보면,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군수품 무역대리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결격사유’란 특정 자격·허가 등을 취득하는 데 제한이 되는 사유를 말하며, 그에 해당하는 자가 특정 자격·허가 등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음.¹⁸⁾

그러나 결격사유 규정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공무담임권 행사 등에 중대한 제약이 되므로 해당 결격사유의 취지와 대상 자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격사유를 최소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¹⁹⁾

- 개정안도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음.

이하에서는 결격조항의 삭제 필요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행 법에 피한정후견인의 직무수행능력을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피한정후견인이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사후적 검증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함.

18) 「법제이론과 실제」, 국회 법제실, 2019. 7., p.360

19) 「법제이론과 실제」, 국회 법제실, 2019. 7., p.369

□ 먼저, 현행법 제57조의2²⁰⁾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현행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²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신청서에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히 고도의 전문성이나 기술적 지식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 「방위사업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군수품무역대리업 관련 규정의 해석능력 및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신청서 및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정도의 수행능력이면 군수품무역대리업을 영위할 능력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이력서 기재된 이전의 유사한 업무 경력의 확인을 통해 직무수행능력의 정도가 간접적으로 검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 「방위사업법」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7조의3제1항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전체 직원 수 및 방위사업 관련 직원 수 등 고용 현황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
4. 삭제 <2019. 12. 3.>

□ 또한 사후적 검증수단에 관하여도 현행법 제57조의3제1항²²⁾에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현행법 시행령 제68조의4²³⁾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청문 과정에서 직무수행능력의 유지가능성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후적 검증수단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타 업종 등록 및 자격 요건 등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제21대국회에 총 31건이 있었는데,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관련 법령의 심도 있는 적용·해석이 필요한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및 사회복지사 등의 결격사유에서도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²⁴⁾.

22) 「방위사업법」 제57조의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등록한 사항 중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동되었는데도 이를 변경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5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

23)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의4(청문)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4) 제22대국회에서는 처리된 건수 없음.

[제21대국회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제외’ 개정현황]

연번	법률명	소관 위원회	내용	개정일
1	경륜·경정법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선수, 심판 등록	’20.11.19.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20.11.19.
3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체육지도자	’20.11.19.
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문화예술교육사	’20.11.19.
5	문화재보호법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문화재매매업자	’20.11.19.
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정기간행물 발행인 또는 편집인	’20.11.19.
7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	’20.11.19.
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방송 통신위원회	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	’20.11.19.
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방송 통신위원회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의 임원	’20.11.19.
10	기술사법	과학기술방송 통신위원회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거부	’20.12.2.
11	협동조합기본법	기획재정위원회	협동조합의 임원 등	’20.12.9.
12	경비업법	행정안전위원회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20.12.9.
13	국가공무원법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임용	’20.12.9.
1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위원회	계측업 등록	’20.12.9.
1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위원회	평가대행자 등록	’20.12.9.
16	소방기본법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안전교육사	’20.12.9.
17	승강기 안전관리법	행정안전위원회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20.12.9.
18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사업 등록	’20.12.9.

연번	법률명	소관 위원회	내용	개정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9	위험물안전관리법	행정안전위원회	탱크시험자로 등록 또는 탱크시험자 업무 종사	'20.12.9.
2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위원회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20.12.9.
21	지방공무원법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 임용	'20.12.9.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무위원회	가맹거래사	'21.3.24.
23	공인회계사법	정무위원회	공인회계사	'21.3.24.
2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정무위원회	임명직 위원	'21.3.24.
2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정무위원회	조정위원회 위원	'21.3.24.
2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정무위원회	조합의 임원	'21.3.24.
27	국가정보원직원법	정보위원회	직원	'21.6.29.
2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위원회	감정평가사	'21.6.29.
29	군인사법	국방위원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	'23.10.6.
3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23.12.8.
31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23.12.20.

□ 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는 법원에서 별도의 상행위의 제약 등을
하지 않는 한,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등 기본권 보장 및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08